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08-54호
- 예고기간 : 2008. 2. 28 ~ 3. 19
- 담당부처 : 산업안전팀(02-6922-0934)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폭발위험장소” 또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화

-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할 때 사용량이나 사용빈도, 작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초래
- (2)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 위험발생원을 용기·배관·설비 등에 고정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 명확히 함
- (3)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 (1)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배제되나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필요
- (2)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분무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인터록 등 연동장치, 조명등의 밀봉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 (3)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작업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 제20647호
- 공포일자 : 2008. 2. 22
- 담당부처 : 국토균형발전본부 건축기획팀(02-2110-8542)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안 제5조제4항제3호의2)

-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함.
-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안 제105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안 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안 별표 1 제28호 신설)

- (1)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
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됨.
- (2)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
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
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8-22호
- 예고기간 : 2008. 3. 26~4.16
- 담당부처 : 에너지안전팀(02-2110-5446)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oleg.go.kr)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세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산업표준화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 26 시행)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한국산업규격표시가 제품의 인증으로 변경되고 관련 조문도 변경되
에 따라 이에 적합토록 「산업표준화법」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
차를 정함(안 제8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하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급시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수요자 요청시마다 점검토록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업자의 편익증대 도모(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17)

- 행정관청에 수요자별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월 1회)하는 대신 점검현황총괄표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폐지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 동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마다에서 수요자의 요청시마다로 개선함으로써 다른 사용시설(1회/6개월)과의 형평성 유지 및 충전대기 차량 증가 등으로 공급시마다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 함(안 제51조제1항)

- 법 제27조제2항에서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공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변경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 (안 제56조제1항제2호나목)

-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의 조항 삭제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 등의 기준 개정(안 별표 3, 4, 5, 6 및 1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술변화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이

- 민간주택관리업체가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시설물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전기사업법상 소유자 및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지
- 상기 임대아파트 전기설비용량이 1,000kW미만인 경우, 임대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시설물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대행사업자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을 직접선임(법 제73조제1항)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2)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법 제73조제2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

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자원부 장관에 등록한 자

②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법 제73조제2항제2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 이 경우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함

3)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대행(법 제73조제3항)

-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를 비고용 계약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동법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①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 미만인 전기설비

②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 미만인 전기설비

• **질의1)에 대하여**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유자는 임대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며, 점유자는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구성된 임대아파트대표회의가 됩니다.
- 따라서, 소유자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전기사업법의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시설물관리를 위탁 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위탁 받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3자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8. 09)

02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인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 및 내용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2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의 기술인력에는 기사 및 안전관리보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하므로 안전관리보조원도 별표15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동법 제73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동법10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산업자원부고시 제18조 관련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따른 설계요율이 2,000만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실시설계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18조 제2항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의하면 공사비 2,000만원까지 실시설계요율은 11.38%를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실시설계 요율은 11.38%를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03)

02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8조제2항의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03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사 해당분야 제한에 대하여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설계업자 선정은 동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2006-69호 중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를 전기분야 중 어느 하나로 한정지를 필요는 없으며,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중 세부평가방법(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25)

생활속 법령상식

기존의 미납수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발전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수리업자가 발전기를 수리해주고 그 수리대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기존의 미납수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발전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평소 A로부터 전동기계 수리요청을 받고 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다. 최근 A가 발전기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를 해주고 그 수리대금 100만원을 모두 받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외상수리대금 300여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 위 300여만원을 다 받을때까지 발전기를 담보로 잡아 둘 수 있겠는가?

A 결론적으로 귀하는 수리대금 300여만원을 다 받을때까지 발전기를 담보조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래 민법상의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예를 들어 시계수리공이 그 시계 수리대금을 받을때까지 그 시계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다만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한정되고 당해 물건 이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시계 수리대금을 완납하면 다른 미납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일단 그 시계는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즉 귀하의 경우 귀하와 A는 모두 상인이고 그동안 상호간에 전동기계수리행위라는 상행위를 하여 온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A로부터 최근의 발전기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그동안 밀린 미납수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대금을 다 받을때까지 위 발전기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유치권이 성립되면 귀하는 그 미납수리대금이 완납될때까지 위 발전기를 채무자 A에게 내어줄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기가 매매되거나 경락되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다 받기 전에는 이를 경락인 또는 매수인등 제3자에게 인도할 의무도 없다.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이렇게...

글 | 정태화 세무사

1.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①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영세율 :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하거나 해외건설을 하는 경우에 “매출세액 = 공급가액 × 0% = 0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게 된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 종자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

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면세포기** :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을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 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 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 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3.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 말자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